

대법원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충청남도의회 당선자인 피고인 1과 그 지지자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① 피고인 1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 피고인 1과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여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②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1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의회의원 당진시제2선거구(송악읍, 신평면, 송산면)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2022. 5. 3. 실시한 국민의힘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어 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임
- 피고인 2는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특보이자 피고인 1을 지지하는 사람임

나. 공소사실의 요지 ➡ 공직선거법 위반

-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을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여 충청남도의 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하려고, 당시 당진시의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로서 지지자를 확보한 A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섭하기로 공모함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5. 1. A와 그 배우자를 당진시 소재 식당으로 오게 한 후 그들에게 합계 3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 피고인들은 곧이어 위 식당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 2는 A에게 전화하여 A를 식당 건물 앞길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A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 원을 집어넣었으나 A가 이를 즉석에서 반환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및 그의 배우자에게 식사비 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현금 50만 원의 제공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피고인 1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함

2.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들 각 유죄(피고인 1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 ⇒ 벌금 400만 원)
- 원심 : 피고인들 항소 기각
 - 피고인들이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원심에 피고인 1과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접수기록 통지를 누락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있는지 여부
- ▣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나. 판결 결과

- ▣ 피고인 1의 상고를 인용하여 이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함

다. 판단 내용

- ▣ 피고인 1의 상고이유 관련
 - 제1심 변호인이 제1심에서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송달장소를 자신의 사무소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제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원심법원에 미치지 않음 ⇒ 피고인 1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1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 피고인 1과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음
 -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 피고인 2의 상고이유 관련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4. 판결의 의의

- ▣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반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임